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제도 위한 목록공시제

효능 · 성분함량 보증 않고 사용가능 여부 검토 후 공개

1,000개 업체 · 800~1,200여제품 유통 · 2000억 시장 추정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자재심의회」 설치, 자료 검토 및 심의 전담



안 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농식품 선택의 최
우선기준이 안전성이며 이에 대한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지
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우리농산물을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체제로 바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
무라 생각된다. 또 지금까지의 생산성 위주, 고투입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약농업형태로 제한된 경지면적 때문에 윤
작이 어렵고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으로 병해충발생이 많아 친환경
농업 실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과수와 특수 원예작물에는
병해충이 다발하여 무농약 농산물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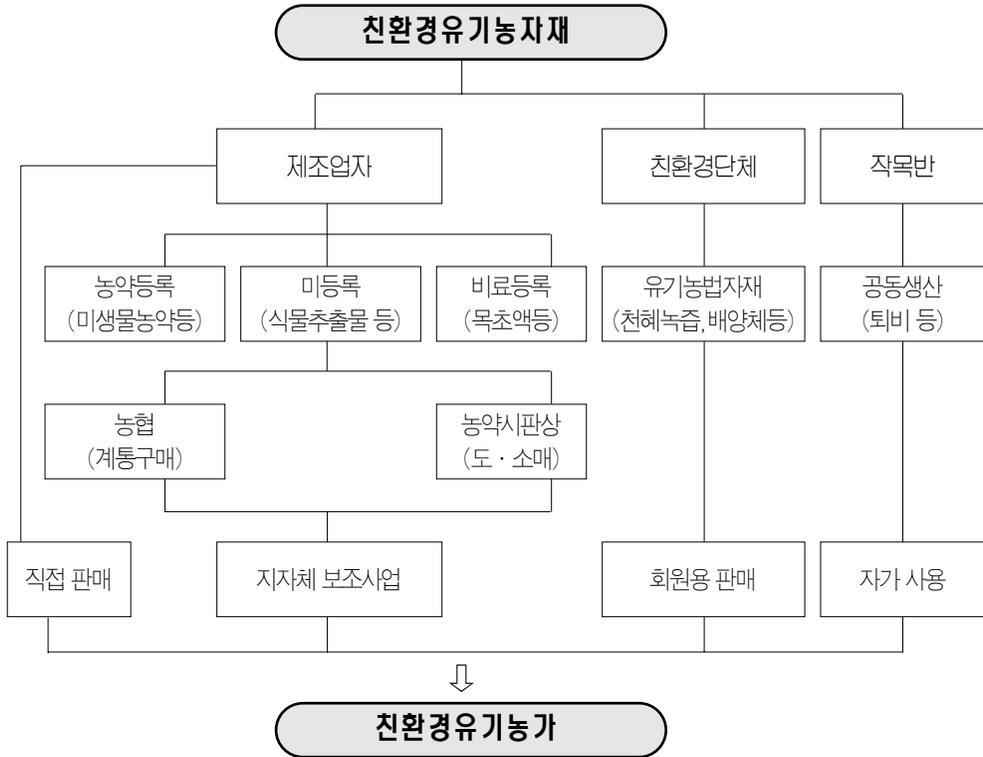
그럼에도 친환경 실천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을 자연순환시스템원
리에 따라 윤작 등을 통하여 실천하지 않고 자재에만 의존하고 있
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따라 매
년 30%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소비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에는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 재
고가 일부 쌓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친환경농자재 유통현황

친환경농업확산에 따라 천연식물추출물 등 농약 및 비료적 효과

【유통 경로】



를 기대하는 다양한 자재가 식물추출물 혼합제 등 800~1,200여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생산업체는 퇴비를 포함 1,000개소가 넘으며 매출액은 2,0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통경로를 보면 퇴비 등을 자가생산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작목반을 통해 공동생산, 사용하고 있고 생산업체가 주산지 농가에 직접 판매하거나 농자재 소·도매상을 통해 공급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친환경농업단체가 미생물배양체 등을 회원들에게 유기농자재로 공급하기도 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정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함은 넓게는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공급, 토양개량, 병해충 억제 및 생육촉진 등에 이용되는 환경친화적인 물질을 총칭라 하며, 좁게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이러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주로 Codex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화학적 합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하다.

관리제도 추진배경 및 경위

친환경농업확산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수요와 공급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7조 별표1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사용 가

능한 자재 118종이 지정만 되어 있고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자재가 유통됨에 따라 각계에서 관리 제도화 요구가 있었다.

또한 05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시 강기갑, 김재원, 김우남, 이방호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인증제 등 제도화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리제도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06년 3월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 제도화를 위해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산림과학원, 농협중앙회, 친환경단체와 협의한 결과 품질인증제는 외국사례가 없고 객관성 있는 품질기준 설정이 어려워 농진청 주관으로 목록공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강기갑, 김낙성, 김명주 의원실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

정법률안이 지난 06년 8월 29일 제26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공포 '06. 9. 27)됨으로서 목록공시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농림부에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하였고 규개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주요내용

목록공시제란 유통 중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의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토항목은 자재특성 및 유래, 사용가능물질 여부, 유해물질 등이며 검토방식은 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자재의 조성비, 물질유래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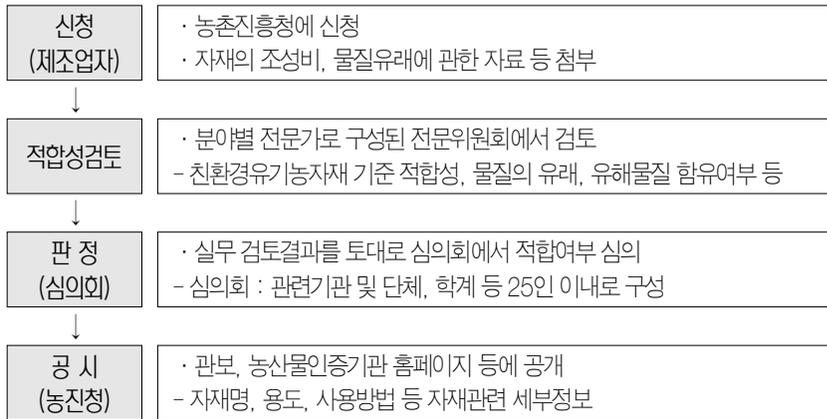
관련법령 주요 개정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 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시행령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농진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기관 및 단



【절차】



체, 학계 등 2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 심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재의 지정·사용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토록 하였다.

【시행규칙】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 도입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를 “친환경유기농자재”라 정의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자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자재심의회」에서 관련자료 등을 검토·심의하여 자재의 특성, 사용방법 및 유기농업에 사용가능 여부 등 세부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록공시를 위한 세부검토기준 및 절차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의 조성비·물질유래에 관한 자료, 유해물질 분석성적서 등 최소한의 자료를 갖추어 농진청

에 자료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관련자료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자재 사용기준의 적합성·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검토하되, 필요시 생산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검토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검토·심의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자재는 목록에 등재할 뿐 만 아니라, 자재의 세부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산물인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량자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등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증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목록공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인에게 적정 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유사자재에 대한 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